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3. 7. 29

운 영 위 원 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3년 7월 23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3. 7. 24

다. 상정일자 : 제26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운영위원회(1993. 7. 29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성종무)

가. 제안이유 :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 9 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 :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, 위원의 임기, 위원의 수당,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진수 전문위원)

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제도화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이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(1문1답식으로 진행)

○ 이석래위원(질의)

제 2 호에 보면 3 인의 위원 중 법관,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

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향후 법관, 교육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“또는”이라는 자구로 보아 법관, 교육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일반 주민 중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할 것인지 계획 구상은?

○ 성종무 기획감사실장(답변)

법관이나 변호사 중에서 1명하고 교육계 측에서 학교교장이나 대학교수 그리고 종교계 목사 중에서 2명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계획중임.

○ 최진판위원(질의)

본 조례가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인 만큼 공직자윤리의식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위하여 남다른 애향심과 관심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구성위원을 사하구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집행기관의 견해는?

○ 성종무 기획감사실장(답변)

가급적 관내 거주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음.

○ 구본춘위원(질의)

제 7조 간사임명에 있어 구체적으로 소속공무원은 누구이며 제 8조 위원 수당에 있어 위원장과 일반위원과의 지급의 범위는?

○ 성종무 기획감사실장(답변)

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간사직을 맡고 위원의 수당은 구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30,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제 2 회 추경에 반영시킬 계획임.

5. 토론요지 : (김희정 위원 찬성토론)

-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정성 확보 및 대 구민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입법 취지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제정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토록 찬성토론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